Procedures for Infectious-Disease related Administrative Dispositions

감염병 관련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

Habeas Corpus

인신보호법상의 구체요청

I believe the custodian has unlawfully confined me to quarantine. Before proceeding with the disposition of Article 4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I requested the custodian to provide me with evidence that would enable me to confirm the factualness of my alleged status as a person suspected of having an infectious disease. This request is completely reasonable and within the scope of my rights provided by law.

수용자가 (즉, 역학조사관이) 불법적으로 강제적인 격리 상태로 저를 구금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염병의심자"로서의 지위를 받아들이기 전에 누군가가 실제로 감염병에 걸렸다는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감염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실제로 제가 그 사람과 접촉했다는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증거 요청은 완전히 합리적이며 법의 범위에 속합니다. 저는 법적 구속력이 없이 집에서 자가격리 상태를 자발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법적 증거 없이 강제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Claims of wrongdoing:

불법행위에 대한 주장

1. The custodian did not provide me with the information I requested pursuant to Item 2 of Article 6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Article 5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 need this information to confirm my status as a person suspected of having an infectious disease. I promised to voluntarily quarantine at home until the custodian provided me with information. The custodian never provided the information.

수용자는 (즉, 역학조사관은) 제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의 제 6 조 제 2 항 및 행정절차법의 제 5 조 제 3 항에 따라면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염병의심자"라는 지위를 받아들이기 전에 정보를 받고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를 받고 증거를 확인할 때까지는 저는 법적 구속력이 없이 집에서 자가격리 상태를 자발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수용자는 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2. The custodian denied me due proces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particular, he did not provide me with the information I needed to submit an opinion. According to Article 27 of the Act, I have a right to submit an opinion before proceeding with the disposition.
수용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용자는 제가 의견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의 제 27 조에 따라 처분을 진행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의견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3. The custodian denied me due process according to Article 12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re subject to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Please see Exhibit 1, which includes a copy of the ruling of the court pursuant to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 헌마 346.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lso recognizes the basic rights like due process set forth in the Constitution.
수용자는 헌법 제 12 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 헌마 346 결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구금에도 헌법 제 12 조 제 4 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됨을 확인한 바 있고 이는 "감염병예방법"상의 격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의 제 4 조 제 1 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합니다.

4. The custodian did not provide me with any information to confirm that the diagnostic test complies with Article 16-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I suspect that a non-compliant test was used to diagnose the alleged infectious person. If the test was not compliant with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the diagnosis that was contingent on such a test would be invalid. This would also invalidate my status as a person suspected of having an infectious disease.

수용자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감염병예방법의 제 16-2 조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부합하지 않는 검사를 사용했던 경우 검사의 결과에 의존하는 진단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감염병의심도 무효가 됩니다. 어떤 종류의 검사를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험실 검사가 어떻게 감염병예방법을 준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I believe that my confinement under quarantine is unlawful. I move the honorable court to order my immediate release and grant me necessary relief as required by law for unlawful confinement and violation of my due process rights.

저는 강제 격리 상태의 구금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 격리에서 즉시 해제를 요청합니다. 저는 법적 구속력이 없이 14 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 상태를 자발적으로 유지할 것이지만 법적 증거 없이 강제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Thank you.

I will immediately quarantine at home, but I want to confirm my status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before proceeding with the disposition. In other words, I want you to provide me evidence that I am in fact a person suspected of having an infectious disease. I have a right to receive such information according to Paragraph 2 of Article 6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Paragraph 3 of Article 5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Furthermore, I have the right to submit an opinion about your information and decision to conduct a 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order to form a meaningful opinion, I request that you send me the information described in Article 21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addition to the basic information, I would like to

know about how the infectious person was diagnosed. What were his symptoms? What type of laboratory test was used? I would like to receive an explanation of how the laboratory test complies with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Finally, how do you know that I was in contact with this infectious person? Please provide me with this information. I will be quarantining at home until I get this information. After confirming this information, we can proceed with the disposition.

즉시 집에서 격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처분을 진행하기 전에 감염병예방법의 지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염병의심자"로서의 지위를 받아들이기 전에 누군가가 실제로 감염병에 걸렸다는 법적 증거를 받고 싶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감염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실제로 제가 그 사람과 접촉했다는 법적 증거를 받고 싶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의 제 6 조 제 2 항 및 행정절차법의 제 5 조 제 3 항에 따라면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절차법의 제 27 조에 따라 처분을 진행하기 전에 저는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의 제 21 조 제 1 항의 정보를 받고 싶습니다. 특히 감염병환자가 어떻게 진단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염병환자의 증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진단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실험실 검사가 사용되었습니까? 또한 실험실 검사가 감염병예방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감염병환자와 접촉했다는 것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이 정보를 받고 증거를 확인할 때까지는 자가격리 상태를 자발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증거를 확인한 후에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